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55103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표자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시장
	소송수행자
참 가 행 정 청	행정안전부장관
	소송수행자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구합5647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10행의 "2,709,972,630원"을 "2,709,972,640원"으로 고친다.

○ 8면 1 내지 2행의 "제47조 제2항"을 "제47조의2 제2항"으로 고친다.

○ 10면 2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국토해양부 등이 2009. 11. 5. 발표한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제1호증 참조)에 의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행을 위하여 건축물의 연

간 에너지소비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내지 의무화(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2012년 현 수준 대비 30% 감축, 2017년 60% 감축, 2025년 제로에너지 의무화)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수범자로서는 이 사건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이 지난 뒤에는 더 이상 위 제도가 시행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정 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령 시행 당시인 2015년 이 사건 각 공동주택에 관하여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6년 말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공동주택의 공정률이 98.23%, 이 사건 제2 공동주택의 공정률이 46.04%에 이르러 취득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또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에서 일반적 경과규정으로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대한 원고의 기득권이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개정 전 법령에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한다는 등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있고, ② 개정 전 법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를 하였는데, ③ 개정 전 법령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개정 전 법령의 관련 내용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경감제도는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그 이후부터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가 달라졌을 뿐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일반적 경과규정은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 개정 전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비과세 또는 감면해줄 것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사건 경감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신뢰는 '납세의무자가 2016. 12. 31.까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한다.'는 것으로, 달리 일몰기한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법령이 개정된 바 없고 개정 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이 일몰기한 전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을 충족할 시 특별히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이 연장될 것에 대한 신뢰는 보호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신뢰가 정당하다거나 원고의 사익을 보호할 가치가 개정 후 경감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

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도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기존 법질서에 기초한 신뢰에 터잡아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더군다나 개정 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일몰기한을 정하고 있었으므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다음에는 취득세에 대한 경감 적용 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관련 규정의 존속 여부는 해당 규정 자체의 신뢰보호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종전과 동일한 범위로 경감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저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는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에 밀접한 원인행위에 나아감으로써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요건에 밀접한 원인행위'는 원고가 2016. 12. 31.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거나, 착공신고를 마쳤다거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이행을 확인받았다(이 사건 제1 공동주택에 한한다)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2항은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6. 12. 31.까지 취득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 그 문언상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일몰기한 내에 있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경감제도와 관련하여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가 일몰기한 내에 있으면 일몰기한 후에 건축물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를 경감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취득세 경감요건의 충족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건축물의 취득시기, 즉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성립하는데[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개정 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이와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게다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요건에 밀접한 원인행위'만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일몰기한인 2016. 12. 31. 이전에 성립하였다고 전혀 볼 수 없고, 그 일몰기한을 넘겨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과연 '밀접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국 일몰기한까지 이 사건 각 공동주택의 '취득'이 아닌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하여도 이 사건 경감제도에 따른 취득세 경감의 특례가 적용될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문언을 벗어나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거나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몰기한 이전에 원인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령 개정 이후 언제든지 개정 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에너지 절감률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에너지효율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법령을 개정해 온 취지가 몰각될 우려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별지 1

거부처분 내역

거부처분일	관련 공동주택	경정청구액			합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2020. 7. 20.	이 사건 제1 공동주택	256,348,763원	-	14,648,500원	270,997,263원
2020. 7. 20.	이 사건 제2 공동주택	216,334,807원	△14,978,010원	12,361,988원	213,718,785원
총계					484,716,048원

정본입니다.

2023. 5. 19.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